

ESG위원회 규정

제정 2021.05.17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 적)

이 규정은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, 기능)

① 위원회는 회사가 E(환경)S(사회)G(경제/거버넌스)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

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.

② 위원회는 E(환경)S(사회)G(경제/거버넌스)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사항을

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

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·승인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 ESG관련 식견/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관련활동 필요 시, 타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추가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소집절차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7조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

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① ESG(지속가능경영) 전략 기본 방향 및 계획
- ② ESG(지속가능경영) 성과 및 추진활동
- ③ E(환경)S(사회)G(경제/거버넌스) 영역관련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의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3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CFO와 ESG 담당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